2015년 4월 2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월 26일(일) 06:00 이후 보도 가능

www.smba.go.kr

보 도 자 료

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장대교 과장(042-481-1601), 김석동 주무관(1604)

중기청, 6개 지역특구 신규지정·변경·해제
- 1,267억 투자를 통해 4,884명 고용창출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특구 4개를 신규로 지정하여, 이에 따른 1,267억 원의 투자를 통해 4,088억 원의 생산유발 및 4,884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4월 24일(금) 중진공(서울)에서, 「제3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신규지정 4개, 계획변경 1개, 지정해제 1개를 심의·의결하였다. (지역특구 수: 163개→166개)

*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33차 특구위원회 지역특구 신규지정현황>

구분	지역	특구명	사업내용	투자금액(억 원)	생산유발(억 원)	고용창출(명)
신규지정	충남	금산·추부 깻잎특구	·깻잎 안정생산 기반구축 ·깻잎 유통가공 활성화	320	406	446
	서울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전통문화특화사업 ·북한산광광특화사업	280	1,236	1,365
	경남	창원 단감산업특구	·"창에그린"공동브랜드구축 ·고품질단감 생산단지 조성	419	531	583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	·명태생산 및 소득기반조성 ·강원3개시군 명태통합브랜드	248	1,915	2,490

□ 한편 신규지정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남 금산·추부 깻잎특구**는 2019년까지 총 320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깻잎생산기반 강화, 깻잎수출 및 가공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깻잎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 금산군은 해발고도 250m의 분지지형으로 일교차가 커서 깻잎의 맛과 향이 뛰어나며 전국대비 45.4%의 출하율로 전국 제1의 깻잎 주산지임

○ **서울 은평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는 2018년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입하여 은평한옥마을 조성 등 전통문화특화사업, 북한산 관광특화사업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한다.

* 은평구는 금성당, 진관사 수륙제 등 지정문화재 35개, 등록문화재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진관사 수륙재 및 은평한옥마을 조성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경남 창원단감산업특구**는 2019년까지 총 419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단감생산기반 조성, 단감제품 지리적표시 등록 및 창원 단감축제 개최 등 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한다.

* 창원시는 단감 재배면적 2,010ha. 39,584톤 생산, 2,635농가, 783억 원의 소득으로 우리나라 단감 재배면적과 생산량, 농가, 생산액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는 강원도,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이 광역특구를 구성해 2019년까지 총 248억 원을 투입하여 명태생산가공, 마케팅 및 관광지원 등을 통해 명태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 속초, 평창, 고성은 과거 명태의 주생산지였지만 기후변화 및 치어 남획으로 국산 명태를 찾기 힘들어 지역특구지정을 통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등 강원 대표 수산물인 “명태”의 생산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남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는 특구지정('07.4)이후 주변관광자원과 지역경제여건이 많이 변화하여 특화사업 수익모델 확충을 위해 특구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음

* 지역특구 특화사업기간을 '07~'14에서 '07~'16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함

○ **경기 연천고대산 평화체험특구**는 특구지정('06)이후 병영체험, 복합휴양, 숙박지원 및 체육시설 등 당초 계획했던 특화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특구의 지정해제를 승인하였음

* 지역특구로 지정되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3가지 규제특례를 활용 및 414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음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역특구를 적극 발굴하라고 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김석동 주무관(☎ 042-481-16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32차 지역특화발전위원회 지정·변경 지역특구 개요

1 금산·추부 깻잎특구 (향토자원유통, 신규지정)

□ 특구개요

○ 위치·면적 : 충남 금산군 추부면
○ 특화사업자/사업기간 : 금산군수 / '15~'19년 (5년)
○ 사 업 비 : 320억 원 (국비 61억, 도비 50억, 군비 98억, 민자 111억)

□ 사업내용

주요사업	내 용	투자계획(억원)
생산기반강화	깻잎 안정생산 기반구축, 깻잎 품질향상 및 친환경 실천지원, 농업인 역량강화, 깻잎생산 인력난 해소	242
유통·가공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깻잎판로 확대, 깻잎 규격출하 및 공동선별·출하조직 육성지원, 깻잎수출 활성화 지원, 깻잎가공 지원	66
마케팅 및 관광체험 연계	금산 추부깻잎 마케팅 지원, 공동브랜드 활용 및 홍보, 깻잎축제 활성화 지원, 깻잎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12

□ 기대효과

○ 사업비 320억 원 투입으로 **생산유발효과 40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02억 원, 고용창출 446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붙임	금산·추부깻잎특구 (6건 / 일반 5건, 권한이양 1건)

특 화 사 업	적 용 특 례	필 요 성	적 용 범 위
깻잎 축제활성화 지원	제22조 1항, 2항 (도로교통법)	축제행사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도로통행 제한	금산·추부 깻잎축제 행사장
공동브랜드 활용 및 홍보	제23조 1항, 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의 표시 기준 완화 (조례로 별도로 정함)	특구지역 내 홍보를 위한 지주이용간판 설치
깻잎의 안정생산 기반구축	제26조 1항, 2항 (농지법)	깻잎생산 확대를 위해 농지의 위탁기준 완화	특구지역 내 깻잎 생산 농지
깻잎 축제활성화 지원	제33조 (도로법)	축제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시판매점 및 안내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용	금산·추부 깻잎축제 행사장
깻잎가공시설 지원	제36조의8 (특허법)	특허출원시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가능	깻잎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출원
깻잎 가공시설 지원	제43조 1항 (식품위생법)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 다른 지역 제품과의 차별성 강화	특구지역 내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표시기준

2 서울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관광레포츠, 신규지정)

□ 특구개요

○ 위치·면적 : 은평구 한옥마을 및 북한산성마을(639,155㎡)

○ 특화사업자 / 사업기간 : 은평구청장 / '15~'18년 (4년)

○ 사 업 비 : 280.4억 원 (국비 72.6 시비 48.6 구비 127.7 민자 31.5)

□ 사업내용

주요사업	내 용	투자계획(억원)
전통문화특화사업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운영, 은평한옥마을 조성, 전통한옥홍보관 운영, 삼천사 韓문화재 탐방 프로그램 운영, 금성당 전통문화프로그램	191.5
북한산관광특화사업	북한산 韓힐링산업 육성, 韓문화페스티벌 개최, 진관사 韓문화체험관 조성, 북한산 둘레길 생태환경 사업, 북한산 너나들이 센터 조성·운영	81.4
연계협력 및 홍보마케팅	3355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을 통한 운영활성화, 북한산 韓문화 홍보 마케팅	7.5

□ 기대효과

○ 총 사업비 280억 원 투입으로 **생산유발효과는 1,23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2억 원, 고용창출 1,365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붙임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적용특례 (일반규제 4건)

특화사업	적용특례	필 요 성	적용범위
- 북한산 韓문화 페스티벌 - 전통공예 한마당 개최	제22조 (도로교통법)	행사진행과 관광객안전을 위한 차량 통행금지 및 제한규제	- 북한산성마을 대서문길 - 한옥마을 진관길
- 북한산성마을 및 한옥마을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구 광고물 및 디자인 계획과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 한옥마을 진관동
- 북한산 韓문화 페스티벌 - 전통공예 한마당 개최	제33조 (도로법)	행사 무대시설, 부스, 판매 가판대, 식음판매대 등의 설치	- 북한산성마을 대서문길 - 한옥마을 진관길
- 북한산 韓문화 페스티벌 - 전통공예 한마당 개최	제36조의 10 (「건축법」에 관한 특례)	다양한 체험, 전시 행사 진행 및 임시 가설물 조성	- 북한산성마을 대서문길 - 한옥마을 진관길

3 창원 단감산업 특구 (향토자원유통, 신규지정)

□ 특구개요

○ (위치·면적)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3-1번지 외 (22,287,261㎡)

○ (특화사업자/사업기간) 창원시장/'15~'19년 (5년)

○ (사업비) 419억 원 (국비 38억, 지방비 312억, 민자 69억)

□ 사업내용

주요사업	내 용	투자계획(억원)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단감생산단지 조성, 생산시설 현대화, 단감품질향상 및 농가 역량강화, 농업인력난 해소 및 인재양성,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94
유통활성화 및 가공분야 육성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해외수출 기반조성, 단감가공시설 지원 및 육성	195
브랜드가치 제고 및 관광체험연계 사업	특산물 박람회 지원, 공동브랜드 활용, 지리적 표시 등록, 창원단감축제 개최, 테마공원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0

□ 기대효과

○ 총 사업비 419억 원 투자하여 **생산유발효과 531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264억 원 , 고용창출 583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붙임	「창원 단감산업 특구」 적용특례 (6건 / 일반 5건, 권한이양 1건)

특화사업	적용특례	필 요 성	적용범위
창원 단감축제 개최	제22조 (도로교통법)	단감축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도로통행 제한	창원단감 축제 행사장 인근 도로
“창에 그린” 공동브랜드 활용	제23조 1항, 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 완화(조례로 별도로 정함)	특구지역내 홍보를 위한 지주이용간판 설치
고품질 단감 생산단지 조성	제26조 1항 (농지법)	단감생산 확대를 위해 위탁기준 완화	특구지역내 단감재배 농지
창원 단감축제 개최	제33조 (도로법)	창원 단감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시판매점 및 안내판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 허용	창원 단감축제 행사시 축제안내 간판 설치
지리적표시 등록	제36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단감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에 우선 심사	특구지역내 생산된 단감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시
단감가공시설 지원 및 육성	제43조 1항 (식품위생법)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 다른 지역 제품과 차별성 강화	특구지역내 생산된 단감을 활용한 가공식품 표시기준

4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향토자원유통, 신규지정)

□ 특구개요

○ 위치·면적 : 강원도 속초시, 평창·고성군 일원(902,300.3㎡)

○ 특화사업자/사업기간 : 강원도지사, 속초시장, 평창·고성군수/ '15~'19년 (5년)

○ 사 업 비 : 248억 원 (국비 75억, 지방비 108억, 민자 65억)

□ 사업내용

주요사업	내 용	투자계획(억원)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수산물 가공시설 조성(고성), 공동저장시설 건립보조금 지원(속초·평창·고성), 명태자동화시설 보조(속초·고성) 등	202
R&D 활동지원	명태 가공 및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가공요리 및 식품개발	12
인력양성 및 지원	명태가공 교육센터 운영, 귀촌지원 및 교육	5
마케팅 지원	3개 시·군 통합 공동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안내간판 설치 등	11
관광시설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 및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판매 시설 조성·운영, 황태테마거리 조성·운영	18

□ 기대효과

○ 사업비 248억 원 투입으로 **생산유발효과 1,91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6억 원, 고용창출 2,490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붙임 「강원도 명태산업광역특구」 적용특례 (5건 / 일반 4건, 권한이양 1건)

특화사업	적용특례	필요성	적용범위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연계 운영, 황태 테마거리 조성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2조)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차량통행 제한	축제장 인근 (속초젓갈콤플렉스센터 및 거진항 인근)
안내간판설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의 표시 기준 완화 (조례로 별도로 정함)	특구 지역 내 홍보를 위한 지주이용간판 설치
황태 테마거리 조성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33조)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점용 허용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40번지 일원, 대관령면 횡계리 48-4번지 일원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213 일원
R&D 연구지원 가공요리 및 식품개발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36조의8)	특허 출원시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가능	명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출원
명태 브랜드 개발 상품 포장재 개발지원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43조)	특구내에 생산된 명태 가공식품, 신제품의 차별화 고급화를 위한 규제특례의 인정 (차별화된 상품 표시)	각종 명태관련 생산물의 홍보 및 안내에 문구 적용

5 고성 체류형레포트특구 (관광레포츠, 계획변경)

□ 특구개요

○ (위치·면적) 경남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 등 (1,634,430㎡)
○ (특화사업자/사업기간) 고성군수, 오경ENG/'07～'14년
○ (투자계획) 민자 1,745억 원

□ 계획변경

○ (변경전) '07~'14년 → (변경후) '07~'16년

□ 사업내용

주요사업	내 용	투자계획(억원)	투자실적(억원)
체류시설	콘도 및 특산물 판매시설	865	-
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수목원, 산책로)	506	-
레저시설	골프장	374	130

붙임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적용특례 (5건 / 토지이용 4건, 권한이양 1건)

특화사업	적용특례	필 요 성	적용범위
체류시설 휴양시설 레저시설	제31조제1항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예정지 소재의 분묘 4기의 개장공고기간 단축 (3개월 → 2개월)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체류시설 휴양시설 레저시설	제36조제2항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특구예정지 소재 공유지 9필지(경남도소관) 특구사업의 목적에 활용	특구지역내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 또는 대부
체류시설 휴양시설 레저시설	제39조제1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특구내 숙박시설과 함께 체육시설(골프장)을 설치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체류시설 휴양시설 레저시설	제40조 (허가등의 의제특례)	농지전용협의 의제	특구지역내 농지전용
체류시설 휴양시설 레저시설	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10조 및 2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함	특구내에 설치되는 골프장 관련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특구관할 지자체장인 고성군수가 위임

6 경기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관광레포츠, 지정해제)

□ 특구개요

○ (위치·면적)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번지 등 34필지(287,134㎡)

○ (특화사업자/사업기간) 연천군수 / '07~'11년 (5년)

○ (사 업 비) 197.1억원 (국비 72.8, 도비 31.2, 군비 93.1)

□ 사업성과

주요사업	내 용	투자계획(억원)	투자실적(억원)
병영체험시설	통일기념관, 병영체험시설 등	39.5	41.5
복합휴양시설	광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	24	18.0
숙박지원시설	유스호스텔, 펜션	30.5	59.1
체육시설단지	대중골프장(야구장으로 변경)	10	135
기타	부지매입, 설계비 등	93.1	161.1

붙임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적용특례 (3건/일반 1건, 토지이용 1건, 권한이양 1건)

□ 특구지정해제에 따른 적용 중지 규제특례

특화사업	적용특례	특례내용	활용실적	철거 등 조치계획
병영체험시설 복합휴양시설 체육시설	제27조의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례)	산림청소유의 국유림 사용 허용 (4,107㎡)	국유림 대부사용 (4,107㎡)	산림청으로부터 사용허가 연장을 득하였으며 국유림대부(시설부지)에 따른 손실보상
병영체험시설 복합휴양시설 체육시설	제39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도시관리 계획상 관리지역(91,243㎡),농림지역(195,891㎡)을 계획관리 지역 및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허용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287,134㎡)	해당사항 없음
체육시설	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특례)	대중골프장(9홀)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권한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연천군수에게 이양	골프장에서 야구장으로 변경하여 실적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고2 지역특구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여, 각 지역이 특색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 '03.6월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공공기관 지방이전, R&D 지방지원 비율확대 등)중 하나

○ '04.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이후 세 차례('06.10, '09.4, '11.5) 개정을 통해 **현재 58개의 법률에 대한 129개* 규제특례가** 법제화

*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특례(61개), 토지이용에 따른 인·허가 의제(53개), 지자체장에 행정권한 이양(15개)

□ 특구지정은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청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 특례 관련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지역특구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지역특구를 지정·고시**

□ 지역특구제도는 규제특례 이외 재정·세제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 **타 유사제도와 차별화**

○ 다만, 중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정책 수립시 **지역특구의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법 제14조제5항)

* 농촌활력증진사업·원예과수브랜드육성지원사업(농림식품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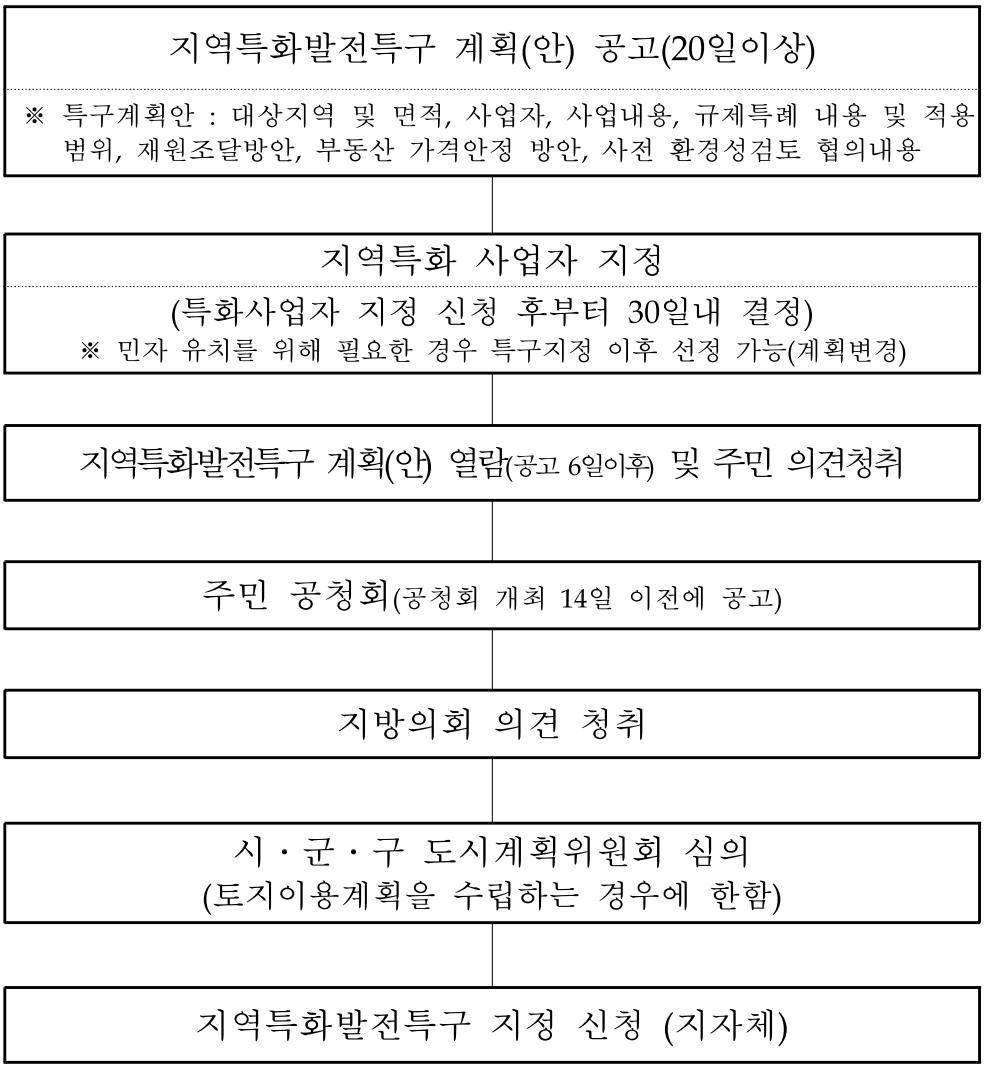
2. 지역특구 지정절차

○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신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특구 실무위원회 검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청장이 지정·고시**

- 지역특구 위원회는 중기청장(위원장)을 포함 **관계부처 가등급 고위공무원 15인**과 분야별 전문가 **민간인 10인이내**로 구성

- 지역특화규제개선과는 지역특구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 기능과 지자체의 지역특구계획 수립에 자문역할을 수행

< 지역특구 계획수립 절차(지자체) >



< 지역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중기청) >

지역특구 지정 신청(지자체 ↔ 중기청)

· 지역특구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서류(자료) 보완·추가 제출요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중기청 ↔ 환경부)

·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등)

↓

관계행정기관 협의(중기청 ↔ 관계행정기관)

· 관계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제출 (1차에 한해 10일 범위 협의 연장가능)
* 기간내 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

↓

지역특구 실무위원회(위원장 : 중기청 차장) 협의

· 관계행정기관 협의가 끝난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
(위원회 안건상정 전 사전검토 및 관계행정기관 협조사항 정리

↓

지역특구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지역특구위원 중 민간위원)

· 안건별로 지역특구의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검토

↓

지역특구 위원회(위원장 : 중기청장) 심의 · 의결

·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과의 적합성
·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의 연관성
·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민자 유치 가능성 포함)
·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주민 등의 의견
· 사업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 기타(실행가능성, 차별성, 생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등)

↓

지역특구 지정 · 고시(중기청)

· 중기청장은 관보에 특구지정 고시(특구계획 승인, 특화사업자로 지정으로 봄)
·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받은 결과를 주민열람(14일 이상)
* 지자체장은 지역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할 수 있음

↓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중기청)

·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및 부진특구를 선정
· 평가결과 지역특구제도개선에 반영

3. 제도운영 현황

□ ‘15. 4월 현재 **123개 지자체**에 **163개 지역특구 지정·운영중**

○ ’04. 12월 최초 지정 이후 ‘09년부터 **연평균 10여개 내외**의 지역특구를 신규지정

년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	‘10	‘11	‘12	‘13	‘14	합계
특구 수	6개	33개	29개	24개	22개	14개	11개	8개	3개	5개	8개	163개

○ 초기 농수산, 특산물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2·3차 산업**(제조업, 에너지, 관광 등)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는 추세

* 향토자원유통물류(78), 관광레포츠(40), 교육(25), 산업연구(17), 의료복지(3)

○ 전남(32개), 경북(26개), 충남(17개), 충북(15개), 전북(13개), 경남(12개), 경기(12개), 강원(12개) 등 전국 지자체에서 고루 활용

□ 현행 129개 규제특례 중 **71개 규제** 총 750회 적용되어 **지역특구당 평균 4.6개**의 특례가 적용

○ 규제특례別로는 옥외광고, 도로통행, 농지의 임대 등 **일반특례**, 농·산지 전용,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이용 특례**, 식품표시기준 등 **권한이양 특례**가 주로 활용

□ **총 12조 7,978억원의 재원이** 163개 지역특구의 각종 특화사업에 투입될 예정

○ 이 중 **민자가 6조 58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46.9%를 차지

(‘14년도 기준)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합계
억원(비중)	26,592(20.8%)	13,358(10.4%)	27,970(21.9%)	60,058(46.9%)	127,978(100%)

4. 지역특구 지정의 효과

① 개별법의 적용 배제 및 별도 규정 적용(특례)

○ 각 개별법에 정한 규제의 특례(적용배제 및 완화)를「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함

* 例) 지역특구 내 敎員을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 옥외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 등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함 등

② 각 부처 예산산업에 인센티브

○ 농림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③ 지자체의 업적 홍보

○ 지역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구의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지자체장의 업적으로 홍보

④ One-Stop Service 제공

○ 신청단계의 내용이기는 하나, 지자체장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시는 각 개별법상의 해당기관의 허가 등을 일일이 받아야 하나, 지역특구의 신청으로 중기청에서 각 부처를 상대로 일괄 처리

참고3 지역특구 지정 현황

□ 연도별 지정 현황

지정년도	향토자원유통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 계
2004	2	2	1	1		6
2005	18	7	5	3	2	35
2006	19	5	3	3	1	31
2007	11	5	4	5		25
2008	7	9	4	1	1	22
2009	7	5	1	1		14
2010	5	3	2	1		11
2011	4	1	2	1		8
2012		1	2			3
2013	1	2	1	1		5
2014	6	1			1	8
지정해제	*2*	*1*			*2*	*5*
계	78	40	25	17	3	163

□ 지역별·유형별 지정 현황

유형 / 지역	향토자원유통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 계
서 울 (5)	1	1	3		1	6
부 산 (5)	1	3	1			5
대 구 (2)	1			2		3
인 천 (3)	1	1	1			3
광 주 (2)	1		1			2
울 산 (2)	1	1				2
경 기(11)	4	4	1	3		12
강 원(10)	5	4		3		12
충 북(12)	9	3	1	2		15
충 남(12)	11	1	4	1		17
전 북 (9)	5	4		2	2	13
전 남(19)	16	8	7	1		32
경 북(20)	17	5	3	1		26
경 남 (9)	4	3	3	2		12
제 주 (2)	1	2				3
합계(123)	78	40	25	17	3	163

※ ( )안은 지역특구 관할 기초지자체 수